

요약

최근 한국보험대리점협회에서는 「GA 설계사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제정하였음. 해당 모범규준에 의하면 소속 보험설계사 100인 이상 보험대리점은 정착지원금 운영 규정, 정착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심사) 기준, 정착지원금 산정·지급 기준, 정착지원금 환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정착지원금 사후 관리 업무를 위한 내부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한국보험대리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로 정착지원금 운영 내역 등을 공시해야 함

○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최근 「GA 설계사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제정 및 시행하였음

- 보험대리점이 보험설계사를 위촉할 때 지급하는 정착지원금¹⁾에 대한 운영방식, 내부통제, 공시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으로써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 모집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GA의 보험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과열로 정착지원금이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음에도 이를 통제하는 기준이나 절차가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
 - 이에 정착지원금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시행함으로써 이를 통해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 완화, 정착지원금의 합리적 집행, 소비자 피해 최소화, 사업비 부담 완화 효과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²⁾

〈표 1〉 대형 GA 정착지원금 지급 현황³⁾

(단위: 백만 원, 명)

구분	2022년	2023년	합계
정착지원금 지급액(a)	124,559	134,459	259,018
정착지원금 지급 위촉 보험설계사(b)	7,184	7,717	14,901
보험설계사 1인당 정착지원금(a/b)	17.3	17.4	17.4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 9. 24), “GA 업계의 건전한 설계사 스카우트 문화 정착을 지속 유도하겠습니다”

- 1) 정착지원금이란 보험대리점이 보험설계사를 스카우트할 때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하며, 보험설계사가 기존 대리점에서 새로운 대리점으로 이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손실에 대한 보전의 의미로 보험영업 관행상 인정되는 비용임
- 2)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보도자료(2024. 9. 3), “보험GA협회,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설명회 개최 - GA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건전 경쟁 질서 확립”
- 3) 소속 보험설계사 수 1,000명 이상 대형 GA 중 보험설계사 정착지원금 제도를 운영하는 39개 사가 2022~2023년 중 경력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정착지원금 현황임

- 해당 모범규준의 시행일은 2024년 9월 3일이며,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인 이상인 보험대리점에 대해 적용됨
- 아래에서 해당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함

○ 보험대리점은 정착지원금 운영 규정, 정착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심사) 기준, 정착지원금 산정 및 지급 기준, 정착지원금 환수 기준을 마련해야 함

- 보험대리점은 정착지원금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수료 지급 규정 외에 별도로 정착지원금 운영 규정을 마련해야 함
 - 정착지원금 운영 규정에는 정착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심사) 기준, 정착지원금 산정·지급·환수 기준, 정착지원금 운영 현황 모니터링 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보험대리점은 정착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정착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정(심사)해야 함
 - 보험대리점은 정착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심사) 시 보험설계사에 대해 정착지원금 지급 관련 계약서, 소득증빙서류 등을 징구해야 함
- 보험대리점은 정착지원금 지급 대상인 보험설계사 위촉 시 위촉계약서와 별개로 정착지원금 지급 관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 정착지원금 지급 관련 계약서 작성 시에는 보험설계사에게 정착지원금 산정·지급·환수 기준 등을 명확히 안내해야 하고, 추후 계약서에 따라 정착지원금 관련 페널티가 부여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관련 보험설계사에게 서면, 메시지(SMS), 전자우편(E-mail), 전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제공해야 함
 - 보험설계사가 정착지원금에 대해 담보(예금질권, 근저당권 등)를 제공하였을 경우 보험대리점 리스크관리 부서에서 해당 담보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도록 해야 함
- 보험대리점은 정착지원금 산정·지급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산정·지급해야 함
 - 보험대리점은 경영 목표, 이익뿐만 아니라 보험 모집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정착지원금을 산정·지급해야 함
- 보험대리점은 정착지원금 환수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환수해야 함
 - 건전한 보험 모집 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정착지원금 환수 기준에 정착지원금 지급 대상 보험설계사의 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율, 민원발생률 등을 반영해야 함
 - 보험대리점은 정착지원금 환수 기준에 따라 정착지원금의 환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분기별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 미환수 내역이 있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정착지원금 운영 주체는 본사를 원칙으로 하며, 보험대리점은 정착지원금 사후관리 업무를 위한 내부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정착지원금 운영 주체는 본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지점(사업단, 지사 등)에서 개별적으로 정착지원금을 운영하는 경우 각 지점은 본사에 정기적으로 정착지원금 운영 현황을 보고하고 본사는 각 지점의 정착지원금 운영 현황을 통할·관리해야 함
- 보험대리점은 정착지원금 사후관리 업무를 위한 내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해당 시스템을 통해 정착지원금 사후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보험대리점은 정착지원금 수령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율, 민원발생률 등 불건전영업행위 관련 지표를 분기 1회 이상 모니터링해야 하며, 해당 모니터링 결과를 정착지원금 환수 관련 페널티에 반영하는 등 정착지원금 사후관리에 적극 활용함

○ 보험대리점은 분기별로 정착지원금 운영 내역 등을 공시해야 함

- 보험대리점은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한국보험대리점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착지원금 운영 내역 등을 공시해야 함
 - 공시내용은 정착지원금 지급 총액, 정착지원금 선지급률, 정착지원금 수령 보험설계사의 정착률, 정착지원금 미환 수율을 포함해야 함